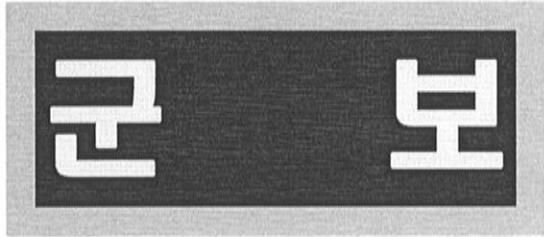


#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584호 2019. 10. 01.(화)

## 【훈 령】

- 고창군 훈령 제463호 고창군 소각시설 공문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19-1242호 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4
- 고창군 공고 제2019-1251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10
- 고창군 공고 제2019-1258호 고창군 경로 아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4
- 고창군 공고 제2019-1276호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
- 고창군 공고 제2019-1277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5
- 고창군 공고 제2019-1285호 2019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 29
- 고창군 공고 제2019-1296호 2019년 고창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공고 32
- 고창군 공고 제2019-1306호 2019년 고창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공고 38

## 【휘 보】

- 2019 종합민원과 신축신고-143 (2017.5.31.) (부안면 서가영)도로지정 46
- 2019 종합민원과 신축신고-123 (2019.5.15.) (아산면 강진희)도로지정 49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고 창 군 수

2019년 9월 27일

고창군 규정 제463호

###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창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명은 협의회 등의 용어로 정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공론화 주관
  2.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공론화 실행계획의 수립
  3. 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
  4. 군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5.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6. 그 밖에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합의문을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합의에 의해 위원, 자문위원, 참관인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전문가, 자문위원, 참고인, 참관인 등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창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2. 고창군의회 의장 또는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의원
3. 소각시설 인근지역 대표 2인
4. 주변지역 대표 2인(위 제3호 인근지역을 제외한 아산면 지역)
5. 고창군민 대표 2인(아산면 이외지역)

- 6.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7.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의진행은 제6조에 의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갈등조정 전문가가 진행한다. 갈등 조정 전문가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갈등조정 전문가를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의사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전문가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논의한다.

제7조(자문위원과 참고인)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개토론회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개토론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론화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의,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여 마무리 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242호

## 「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 9. 10.

고 창 군 수

1. 모집기간 : 2019. 9. 10(화) ~ 2019. 9. 18(수)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수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천에 의해 최종 7명 위촉
3.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사회경제, 사회적기업 분야

구 분	계	도시계획	건축	사회경제	사회적기업	비고
예비명부 모집인원	21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3명 이상	
평가위원 선정인원	7명	2명	2명	2명	1명	

#### 4. 용역개요

- 용역명 : 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285-1번지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5.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가. 자격조건

-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해당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상인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관련 분야 전공자
- 4) 평가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나. 제외대상

-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된 자
-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자

6.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9. 10(화) ~ 9. 18(수)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전라북도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다. 접수방법 : 공문, 팩스, 이메일 등 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 주 소 : 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팩스번호 : 063-560-2579

○ 이 메 일 : sirarol7@korea.kr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제출.

※ 공문제출 시 비공개로 제출.

※ 팩스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건설도시과 도시디자인팀(☎063-560-2568)으로 문의.

라.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서식 1)
- 보안각서 1부(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중 1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평가위원 추첨·선정

가. 추첨일시: 2019. 9. 30(월)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평가위원 7인(위원장 포함)

다. 선정방법

-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 번호를 추천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선정된 평가위원(7인)중에는 다른 시도 위원이 2명 이상이 포

합되어야 하며, 2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평가 위원부터 ① 다빈도순 ② 고령자(동수일 경우)순으로 보충하되, 보충된 다른 시·도 인원만큼 기 선정된 평가위원(7인) 중 후순위 위원이 제외됩니다.

- ※ 분야별 후보위원 부족 시 도시계획, 건축, 사회경제 순으로 선정  
 라. 선정 통보 : 제안서 평가 전일 17시부터 유선 연락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 8. 평가위원회 개최

- 가. 일 시 : 2019. 10. 7(월) 14:00  
 나. 장 소 : 고창군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  
 ※ 상기 일정 및 장소 변동 시 별도 유선통보

## 9. 기타사항

-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안서 평가일[2019. 10. 7(월) 14:00]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사용됩니다.  
 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위원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상기 일정은 고창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건설도시과 도시디자인팀(☎ 063-560-2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서식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서식2] 보안각서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 [서식1]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작성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2]

# 보안각서

본인은「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 사실 및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9.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고창군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19-1251호

###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고창군에서 시행중인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고 창 군 수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 명칭 :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99,700㎡

다. 사업기간 : 2019. 9. ~ 2022. 12. 31.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명 : 고창군수(건설도시과장)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2. 토지 출입 내용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한 : 2019. 10. 1. ~ 사업종료시까지

####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보상대상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37-3번지 외 19필지에 소재한 토지 및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다. 열람기간 : 2019. 9. 16. ~ 2019. 9. 30. (15일간)

라. 열람장소 : 고창군청 3층 건설도시과 도시디자인팀(☎063-560-2567)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에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열람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이의신청 :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 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추천감정평가 업자명 :
- 추천일자 :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디자인팀(☎063-560-2567)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258호

##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9일

### 고 창 군 수

#### 1.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경로 이·미용비 지원과 관련 수혜자의 편리를 위해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고창사랑 이미용 상품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원 내용 등(안 제3조)
- 지원방법 및 시기(안 제5조)
- 사용권의 수불 관리(안 제9조)
- 기타 조례에 의한 준용(안 제10조)

#### 3. 의견제출

-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292, Fax 560-229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b>			
입법예고명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b>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b>			
<p>「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09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b>고 창 군 수 귀하</b>			

##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9.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 1.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경로 이·미용비 지원과 관련 수혜자의 편리를 위해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고창사랑 이미지 상품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 내용 등 (안 제3조)
- 나. 지원방법 및 시기 (안 제5조)
- 다. 사용권의 수불 관리(안 제9조)
- 라. 기타 조례에 의한 준용(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수반여부 : 여
- 다. 입법예고(2019. 09. 17. ~ 2018. 10. 06.) 결과 :
- 라. 규제심사 :

### 4. 따로붙임

- 일부 개정 조례안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로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노인 이·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해년도 만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경로 이·미용비는 고창관내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권의 지원금은 60,000원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 별로 고창사랑 이·미용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는 경로 이·미용권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대상자 지원 결정 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용권을 제작하는 협약은행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읍·면장은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한다.

제6조(이미용권 제작 협약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사용권 발급한 뒷면 표기년도 까지로 한다.

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군” 과 협약을 맺은 은행은 협약에 의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의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거 사용 대상이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① 군수는 사회복지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말 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사용권이 고창사랑 이미용 상품권인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276호

##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20일

# 고 창 군 수

### 1. 제정이유

- 자치분권 확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고창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 ~ 제6조)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5조)

### 3. 의견제출

-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241, Fax 560-225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63-560-2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b>			
입법예고명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b>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b>			
<p>「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09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b>고 창 군 수 귀 하</b>			

#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9.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정이유

- 자치분권 확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고창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 ~ 제6조)
- 라.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 마. 위원장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 바.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수반여부 : 여
- 다. 입법예고 :
- 라. 규제심사 :

##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촉진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고창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277호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20일

고 창 군 수

### 1. 제정 이유

-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안 제3조)
- 간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수당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3. 의견제출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241, Fax 560-225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63-560-2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09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고 창 군 수 귀 하</p>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정이유

-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 라. 간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마. 수당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나. 예산수반여부 : 여
- 다. 입법예고 :
- 라. 규제심사 :

###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 고창군 조례 제 호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창군 공고 제2019 - 1285호

## 2019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창군 『2019년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4.

##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9년 고창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2. 사업예산 : 165백만원(국 99, 도 19.8, 군 46.2)
3. 사업규모 : 약 10대 정도
4. 사업기간 : 2019. 9. ~ 예산 소진시까지(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5. 지원대상
  - 고창군에 등록된 Tier 1 이하,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를 보유한 공공기관, 개인 및 사업자('04년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75kw이상 130kw미만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미만 '06년 제작 건설기계 포함)
6. 지원내용
  - 노후 건설기계(Tier 1이하)에 대하여 신형엔진(Tier 3이상)으로 교체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침변경시 보조금 변동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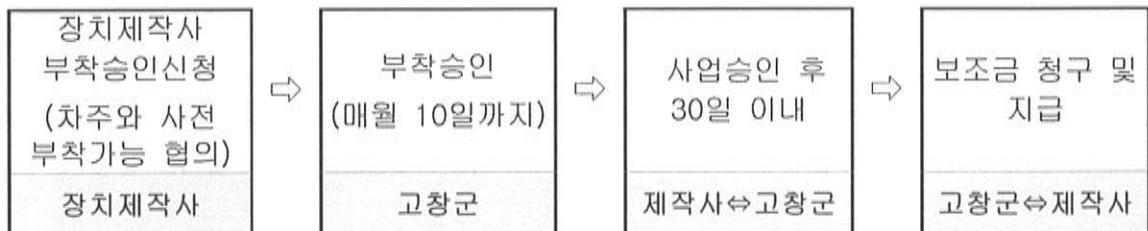
## 7. 지원조건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부착

-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 신청서(붙임 1)를 제출하여 고창군에서 승인·통지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단, 지방세 체납 등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엔진교체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하여야 함
  -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고창군에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 이상은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로 인한 등록말소를 할 수 없음
  -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회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8. 사업진행 절차

- 신청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 제작사를 통해 고창군으로 참여 신청



※ 제작사에서 자체 영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기 물량 소진 가능

## 9. 문의처

- 고창군 생태환경과 (☎ 063-560-2875)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 이알인터내셔널(주) (☎ 031-940-2560)
  - 에이치케이엠엔에스(주) (☎ 070-4267-2731)
  - (주)엑시언 (☎ 031-270-6358)

##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굴삭기 ( ) 지게차 ( )	등록번호	
	형식(모델)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엔진교체 사업자				
<p>고창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보조금 지원조건을 숙지하고, 2019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인)</p> <p>고창군수 귀하</p>				
<p>※ 제출서류</p> <p>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p> <p>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p>				

고창군 공고 제2019-1296호

## 2019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고창군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 등을 저감해 나가기 위해 노후 운행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께서는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일

### 고 창 군 수

#### □ 사업개요

- 사업명: 2019년 고창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규모: 약 195여대(노후경유차 DPF 190대, 건설기계 DPF 5대)  
※ 차량별 지원금액에 따라 물량변경 가능
- 사업내용: 배출가스 5등급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 지원
- 사업비 : 약 824,000천원(사업비 변경 가능)
- 신청기간: 2019년 9. 26. ~ 10. 10.(2주간, 예산 소진시까지)  
- 주말,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접수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붙임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사회적공헌,약자 증명서 사본(해당자만)

####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중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등록일이  
⇒ 2001.1.~2007.12.31. 등록된 일반차량(승용,승합,특수,화물) 우선지원  
※ 단 일부차종은 DPF가 개발되지 아니하여 장착이 불가 할수도 있음  
⇒ 1995.1.1.~2007.12.31.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우선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차량번호로 조회가능
  - 환경부 홈페이지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 :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등록원부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제한

- ※ 보조금 지원 순위 선정 방법
  - < 1. 생계형 차량 : 대상물량의 20%(전액지원) >
    - 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가.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 나. 신청자가 대상물량에 미달한 경우 일반 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다만, 생계형차량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2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 < 2. 우선지원 : 대상물량의 30% >
    - 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나.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
    - 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용도가 영업용인 차량
      -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 < 3. 일반 : 대상물량의 50% >
    - 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가.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 나.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순위자
      - 단, 차순위 접수자가 없을 경우 신청기간 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 지원내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노후경유차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0%	462	
	복합 소형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10,577	462
중형	7,778	462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은 자부담금 면제

○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 제출서류: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생계형 차량 여부 확인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사업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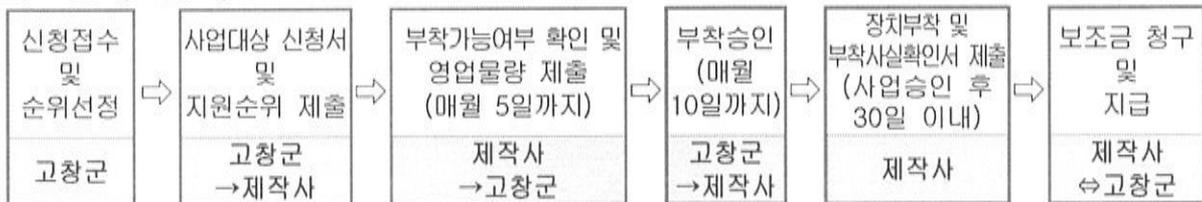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조건

- 해당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신청서(붙임1)를 고창군 생태환경과에 제출하고, 고창군과 장치제작사가 부착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경우 승인한 건에 한하여 지원
  - ※ 제작사와 부착가능여부 협의 후 개별 통보 예정
- 정부 보조금 등은 고창군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 신청인은 차량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 장치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보증기간 3년)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반납의무 있음.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사고, 차량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고창군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하여야 함.
  - ※ 의무운행기간 이내: 장치 및 보조금 반납/의무운행기간 경과: 장치만 반납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실시 (DPF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실시)
- 대상자 선정 후 장치 부착 및 유지보수는 지정공업사에서만 가능
  -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향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불가
  -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진행절차



- ※ 제작사에서 자체 영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기 물량 소진 가능
- ※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차량이라도 제작사의 장치부착 가능 여부 확인 결과 부착이 안되는 차량은 선정 불가

- 추진일정
  - 제작사에 지원순위 및 신청서 전달
  - 지원순위에 따라 제작사가 부착가능여부 확인 및 개별통보

□ 문의처

- 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875)
-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문의처
  - (주)일진복합소재 ☎1588-7558 (031 220 0862)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 2027 7029)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 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고 창 군 수 귀중

고창군 공고 제2019- 1306호

## 2019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고창군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 등을 저감해 나가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완료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매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일

### 고 창 군 수

#### □ 사업개요

- 사업명: 2019년 고창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 사업물량: 5대 (20백만원)
- 사업내용: 조기폐차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400만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2019년 9. 30. ~ 10. 11.
- 신청방법: 각 읍.면사무소 및 생태환경과 방문 접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읍면사무소 신청 선행 필수)  
-제출서류: 사업 지원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2),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우선 선정 대상자별 증빙서류(3쪽 우선 선정 대상자별 증빙자료 참고)

#### □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 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조기폐차 진행 차량과 LPG화물차 신차의 정의는 동일인이어야 함.

○ (조기폐차기준) 다음 4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2019. 10. 11.)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1. 우선순위 대상자 >

가. 지원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4순위	○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나. 우선 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1순위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 증명서 1부
2순위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다문화가구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1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순위	○ 사회복지시설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소상공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 우선 순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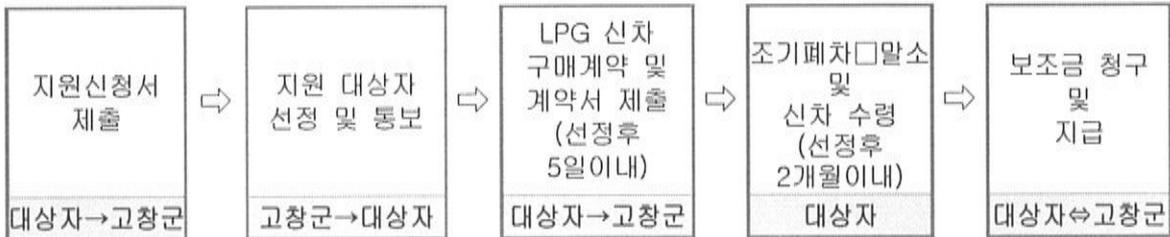
가. 연식(최초 등록일 기준)이 오래된 차량 순  
 나.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 2. 일반차량 >  
 ○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을 폐차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대상자 선정 이후 5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을 제출하지 않거나,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이 없을 경우
- 매매 취소 등 사유로 신차 구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폐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LPG 1톤 화물차 이외 차량)으로 교환한 경우

□ 진행절차



- ①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사무소 또는 생태환경과 방문접수
  -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선행 필수 (읍면사무소)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선 선정 대상자별 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함, 3쪽 참조)
-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고창군 → 지원대상자
- ③ LPG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지원대상자 → 고창군
  - 신차 구매계약서 생태환경보호과 제출(5일 이내, 선정자에 한함)
- ④ 조기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대상자 선정 2개월 이내)
- ⑤ 보조금 신청 : 지원대상자 → 고창군 (대상자 선정 2개월 이내)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3호)
  - 조기폐차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 LPG 1톤 화물차 신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 ※ 조기폐차 차량과 LPG화물차 신차의 소유주 명의, 사업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의 명의를 모두 동일해야 함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 4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⑥ 보조금 지급 : 고창군 → 소유주 (차량 소유주 통장 입금)
  - LPG 신차 구입시 1대당 400만원 정액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지원금에 추가 지원

#### □ 문의처

- 고창군 생태환경과 (☎063-560-2875)

- 붙임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4. 위임장







## &lt; 붙임 4 &gt;

**위 임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신차구입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입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시서] <개정 2012.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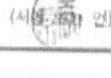
**도로 관리 대 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지번 622, 629
건축주 서 가 영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20m-종합인평과 - 851109- 신축인고-143
도로길이 57.10m	도로너비 4.0m 도로면적 246.0㎡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622	200.0	2019.07	서가영	851109-	
629	46.0	2019.07	서가영	851109-	

작성자 : 직급 **시설 8** 성명 **국도립**   
 확인자 : 직급 **시설 6** 성명 **이종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산 <인 오>



현황도

축 산 <인 오>



[별지 제2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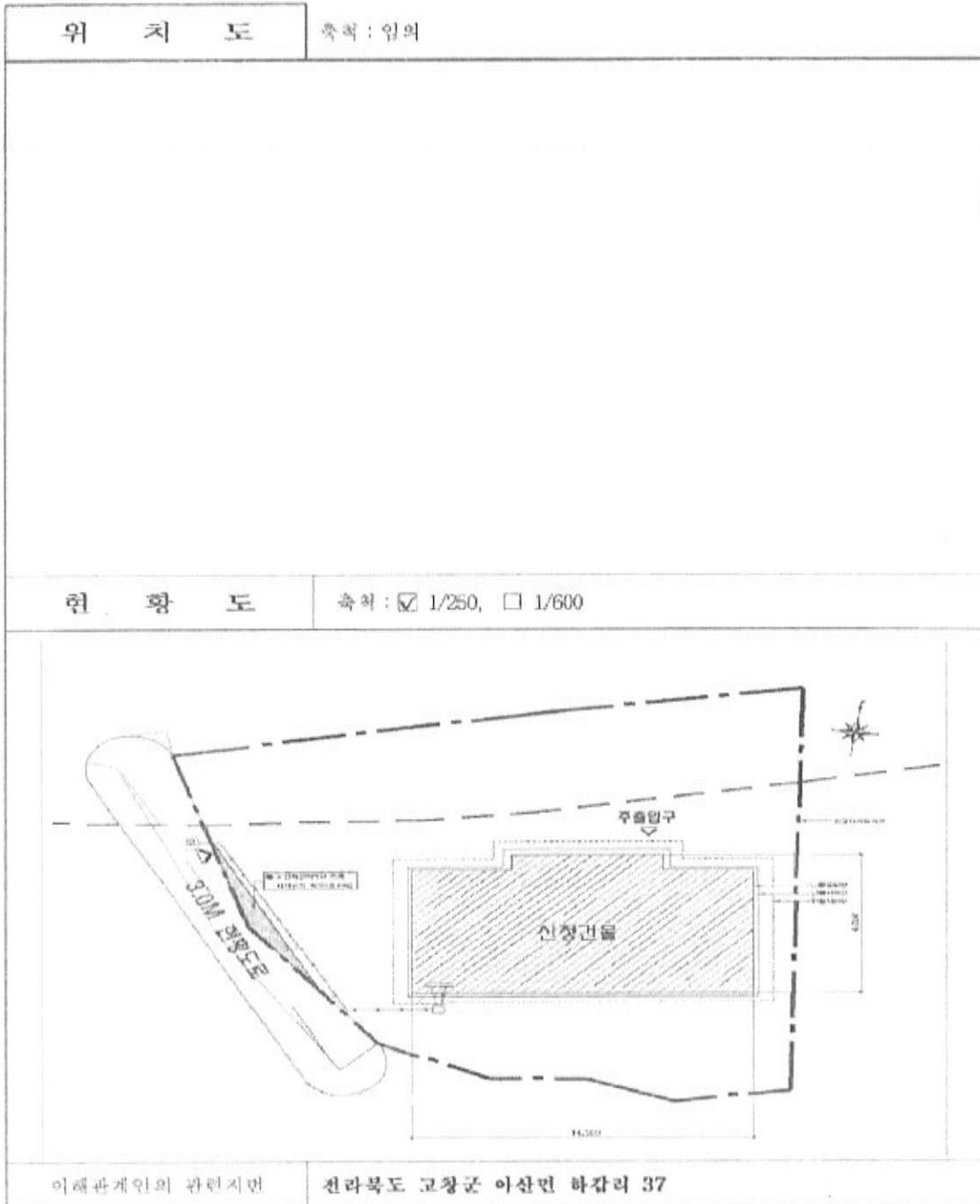
(2면중 제1면)

<b>도로대장</b>				지정번호 □□□□-□□□□	
대지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시 번	37
건축주	강진희	주민등록번호	730825-	허가(신고)번호	2019- <del>고창군</del> 아- - <del>83</del> 신2-123
도로길이	M	도로너비	3.0 M	도로면적	5.0 M <sup>2</sup>
<b>이해관계인 동의서</b>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용적면적(m <sup>2</sup> )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아산면 하갑리 37	5.0	2019.09	강진희	730825-	강진희
작성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0304-26821 대  
'98.12.28. 세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sup>2</sup>)

(2면중 제2면)



30304-26822 대  
98.12.28 세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sup>2</sup>)